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

발의연월일 : 2022년 10월 21일

발 의 자 : 황진희・이학수・장윤정
이인규・오지훈・이호동
변재석・김호겸・오창준
김광민・장한별・김옥순
이자형・김회철・김미리
문승호 의원(16명)

1. 개정이유

가. 최근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누워 있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되었음.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부당행위는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4.16.)되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었음.

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 [붙임 1]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의견 반영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원역량개발과(교권보호담당) : 의견 반영

다. 그 밖의 사항

1) 개정조례안 : 덧붙임.

2) 입법예고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1호

가) 예고기간 : 2022. 9. 22. ~ 9. 28.

나) 예고결과 : 1건 (관계부서 의견과 같음)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첨부 (예산정책담당관-4032, 2022. 10. 18.)

---------- [붙임 2]

4) 기타사항 : 현행 조례 ---------- [붙임 3]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교원지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와의 직통 상담창구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 구축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원”을 “법적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원지위법」”을 “법”으로, “교육활동보호”를 “교육활동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4조(책무) ① (생 략)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와의 직통 상담창구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 구축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 2. (생 략) 3.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9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법적 지원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실태조사 반영) ①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반영) ① --------- 법---------- ---------- 교육활동 보호---------. ② -------- 법 ---------- ----------.

관계 법령 발췌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2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나.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0. 1.] [교육부고시 제2021-26호, 2021. 10. 1., 일부개정]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붙임 1 **관계부서 의견**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의견 반영 (입법정책담당관-4134, 2022. 10. 11.)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제명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타 시·도 사례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교육활동 보호 사업 규정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4조 교권센터 설치 및 교권침해 예방교육 규정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12조~제15조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및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규정
검토 의견	○(입법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본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 ○(타 법령과의 중복성 검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정함 - 이들 법령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제도에 관한 규정이며, 본 조례안은 매뉴얼 개발, 관련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성별영향평가 지침 위배 여부) 본 조례안은 성별 구분이나 고정관념과 관련한 표현이 없고, 성별 차이 등 차별 조항이 없어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위반하지 않음 *자구수정 등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함
검토기간	2022년 9월 20일~
검토 담당자	행정6급(입법조사관) 임 이 랑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의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10월 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교육기획위원회 귀하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원역량개발과(교권보호담당) : 의견 반영

(대외협력과-9919, 2022. 9. 29.)

원 안	수 정 의 견	참고의견	반영여부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 ---------- ---------- ----------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교원지위법은 매년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취지로 의무규정으로 수정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반 영
제9조 ② 3. ---------- 실질적인 법적 대응 지원	3. ---------- “법적 지원” 으로 수정	‘실질적’ 의 해석 범위에 따라 법적 지원 내용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 보완 필요 [참고] 경기도교육청 법적 지원 내용 현황 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일괄, 단체 가입하여 변호사 비용등 법률 방어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②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하여 운영 중임.) ③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부서 내 교권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 자문 지원.	반 영

붙임 2 **비용추계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안 제5조의 2)

2. 미첨부 근거 규정

o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o 안 제5조의2(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미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중이거나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안 제1항 매뉴얼의 경우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를 자체 제작·배포하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o 또한 안 제2항 교육활동 침해 업무담당자 지정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담당팀 5명과 25개 교육지원청에 39명[1] 총 4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 제4항 예방 교육의 경우 자체 예산과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행중에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세부내역은 미첨부 사유내역 참고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실 교육예산분석팀 주무관 박예라 (031-8008-7304)

1) 부서 제공 자료 참고

[참고] 비용추계 및 미첨부 사유내역

1. 비용추계 전제 및 재정수반 요인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 안 제5조의2(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 제1항 교권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 마련의 경우 이미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매뉴얼을 자체 제작·배포하고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제2항 교육활동 침해 관련 업무담당자는 2022년 9월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담당팀 5명과 교육지원청 및 교권센터 등 업무담당자 39명이 맡고 있어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제4항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의 경우 2022년 예산에 편성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고 2023년에도 예산 요구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교육활동 홍보 및 자료개발 예산 : 2022년 14,600천원 편성

※ 교육활동보호 연수 및 센터 운영 예산 : 2022년 13,980천원 편성

[붙임 1] 2022년 본예산 편성 현황(일부 발췌)

사업명(세부항목)			2022년 본예산
○ **교육활동 홍보 및 자료개발**			**14,600**
- 자료개발수당(기본)	40,000원×20명×4회	=	3,200
- 자료개발수당(초과)	20,000원×20명×4회	=	1,600
- 협의회비	20,000원×20명×2회	=	800
- 홍보자료제작	1,000,000원×3종×3회	=	9,000
○ **교육활동보호 연수 및 센터 운영**			**13,980**
- 연수운영 강사수당(기본)	200,000원×4명×2회×3권역	=	4,800
- 연수운영 강사수당(초과)	100,000원×4명×2회×3권역	=	2,400
- 연수운영 원고료	5,000원×9매×2시간×4명×2회×3권역	=	2,160
- 연수 및 센터운영 물품구입비	1,000,000원×1회×3권역	=	3,000
- 연수 및 센터운영 협의회비	27,000원×10명×2회×3권역	=	1,620
○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84,870**
- 전담변호사 인건비	75,846,000원×1명	=	75,846
- 상담실 운영	5,784,000원	=	5,784
- 국내여비	27,000원×4명×5회×6월	=	3,240
○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350,000**
-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350,000,000원×1회	=	350,000
○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1,589**
- 심의수당(기본)	70,000원×7명×2회	=	980
- 심의수당(초과)	30,000원×7명×2회	=	420
- 협의회비	27,000원×7명×1회	=	189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지원사업 운영**			**50,000**
- 보호조치 비용 선지급 운영	1,000,000원×50명	=	50,000

[붙임 2] 2022년 본예산 편성 사업내용

사업명(세부항목)	사업설명
교육활동보호 홍보 및 자료개발	◦ 교육활동 보호 연수(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교육 3주체 대상 교육활동보호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여 • (학교) 통화연결음 제작 및 배포 • (교원) 교육활동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수정 보완하여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파일제공 및 e-DASAN 시스템 활용 예정 • (학생)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용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활동보호법률 지원단 운영	◦ 「교원지위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7명의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심의하여 교육감 고발 조치(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붙임 3 **현행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8.] [경기도조례 제6729호, 2020. 10. 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이 예우받고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3.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⑤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밀을 유지하여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 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한다.

1.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구축

2. 민원 및 상담 전용 별도 공간 마련

제8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 및 컨설팅

2.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3.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④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 관련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 등을 둔다.

⑤ 그 밖에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행정업무의 경감)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반영) ①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